

# 모델 32

## 중간재 규정 활용 모델

### 0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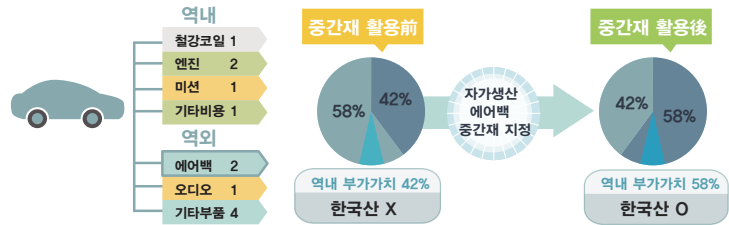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로 사용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규정 활용을 통해 FTA 활용을 제고 가능 모델
  - 중간재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중간재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해 주는 것

### 02 | 비즈니스 모델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원산지 판정할 때 미세한 차이로 충족/불충족 시 적용
  -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용이

#### 중간재 규정 이용 모델



자동차 : 역내 부가가치 55%이상시 원산지 인정

## 협정별 근거규정 비교

| 구분   | 칠레        | 미국        | 싱가포르      | 페루        | 인도 | 아세안 | EFTA      | EU/터키     |
|------|-----------|-----------|-----------|-----------|----|-----|-----------|-----------|
| 인정여부 | ○         | ○         | ○         | ○         | ×  | ×   | ○         | ○         |
| 지정의무 | ○         | ×         | ○         | ×         | ×  | ×   | ×         | ×         |
| 대상물품 | 자가<br>생산품 | 자가<br>생산품 | 자가<br>생산품 | 역내<br>생산품 | ×  | ×   | 역내<br>생산품 | 역내<br>생산품 |

##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중간재 적용 FTA